

구미시 강동문화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시 강동문화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23. . .
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사업장 주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할인기준을 통일하여 민원발생 소지를 방지하며, 공연 부속설비 사용료의 변경된 사항의 반영으로 강동문화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사업장 위치(안 제3조)

- (현행) 인동가산로 392 → (개정) 인동가산로 392(구평동)

나. 단체관람료 할인 인원기준(안 제12조제7항)

- (현행) 30명 → (개정) 20명

다. 문화재단 이관 가능성으로 운영에 관한 문구 변경(안 제20조)

- (현행) 복지회관 교육과정 운영 → (개정) 복지회관 운영

라. 회관 사용료 중 부속설비의 변경사항 및 구성 등 정비(안 별표1)

마. 이용료 감면 요율 수정(안 별표2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153조 및 제156조

나. 합 의 : 정책기획과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구미시 조례 제 호

구미시 강동문화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강동문화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“392”를 “392(구평동)”로 한다.

제12조제7항 중 “30명”을 “20명”으로 한다.

제20조 중 “교육과정 운영”을 “운영”으로 한다.

별표1 중 부대시설사용료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표2 중 이용료 감면 요율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사용료 등에 관한 적용례) 제12조제7항과 별표1, 별표2의 개정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[별표 1]

복지회관 대관 사용료 기준표(제6조제1항 관련)

3. 부대시설사용료

시		설	별	단	위	사용료(원)	비	고
냉 · 난방	냉		방	시간당		연료시가의 10% 가산	1. 냉난방 의무사용 기간(전시설포함) - 냉방 : 6월 ~ 9월 - 난방 : 11월 ~ 3월	
	난		방					
무대시설	오케스트라리프트			1회		20,000	1. 1회란 공연1회를 뜻함	
	음향반사판		30,000			2. 오케스트라리프트는 연주용으로만 사용 가능		
	고무깔판		50,000			3. 덧마루는 사용자가 설치 및 철거		
	덧 마 루		3.3㎡당	20,000	4. 덧마루 3.3㎡ 미만은 무료			
	의자, 보면대		10set당	10,000	5. 의자, 보면대 추가시 개당 1,000원			
피 아 노	보스턴			1회		30,000	1. 1회란 공연1회를 뜻함	
	스타인웨이		50,000			2. 무대설치 작업 및 연습조명 사용료는 기준액의 50%로 함		
전 자 오르간				1회		40,000	3. 피아노 추가 조율비는 사용자 부담	
무대조명	대공연장			1회		40,000		
	소공연장		20,000					
조 명 기자재	팔로우핀라이트			1대/1회		10,000	1. 1회란 공연1회를 뜻함	
	파라이트64			개당/1회		2,000	2. 헤이저 및 포그머신 재료비는 사용자 부담	
	파라이트46			8대(1조)/1회		5,000	3. 사용자 설치 및 운용	
	서스포라이트			개당/1회		3,000	4. 무대설치 작업 및 연습조명 사용료는 기준액의 50%로 함	
	헤 이 저			1대/1회		10,000		
	포그머신			1대/1회		10,000		

시 설 별		단 위	사용료(원)	비 고
음 향 시 설	음향기본 (외부장비등)	1회	50,000	1. 1회란 공연1회를 뜻함 2. 유·무선 마이크 건전지는 사용자 부담 3. 무대설치 작업 및 연습음향 사용료는 기준액의 50%로 함 ※ 음향기본 : 메인스피커, 콘솔, 음향용 전원
	무선마이크	1대/1회	20,000	
	유선마이크	1대/1회	10,000	
	인 터 컴(무선)	1회	20,000	
	전시실 방송장비	1회	50,000	
영 상 시 설	행사녹화(File) - 천생홀	1회	100,000	1. 1회란 공연1회를 뜻함 ※ 프로젝트 source 장비는 사용자가 준비
	DLP프로젝트 중 앙		100,000	
기 타	연습실	1회(4시간)	40,000	

[별표 2]

복지회관 사용료, 이용료 및 수강료 감면 요율(제7조 관련)

○ 이용료 감면 요율

구 분	대 상	감면 요율
감경	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	100분의 50
	「장애인복지법」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)	
	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	
	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	
	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	
	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	
	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	
	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	
	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	
	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	
	「구미시 인구정책 지원조례」에 따른 다자녀가정 구성원	
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		
○ 이용료 감면 요율은 체육시설 중 헬스장에만 적용한다.		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위치) 복지회관은 구미시 인동가산로 <u>392</u> 에 둔다.	제3조(위치) ----- ----- <u>392(구평동)</u> ----- -----.
제12조(관람료) ① ~ ⑥ (생 략)	제12조(관람료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
⑦ 제19조에 따른 회원과 <u>30명</u> 이상의 단체에 대해서는 복지회 관 이용에 대해 할인 혜택을 줄 수 있다.	⑦ ----- <u>20명</u> - ----- ----- -----.
제20조(위탁 운영) 시장은 필요하 다고 인정할 때에는 복지회관 <u>교육과정 운영</u> 에 관한 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 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.	제20조(위탁 운영) ----- ----- <u>운영</u> ----- ----- -----.

관계법령

□ 지방자치법

제153조(사용료)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제156조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 ①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,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.

② ~ ③ (생략)

소 관 부 서		문화예술회관
입 안 자	과 장	윤 희 선
	팀 장	안 희 영 (480-2950)